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590

발의연월일: 2023. 8. 1.

발 의 자:이형석·송갑석·조오섭

이병훈 · 양향자 · 윤영덕

이용빈 · 이해식 · 임호선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,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 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도록 하고, 안전문화활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·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66조의4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주민이 참여"를 "주민과 기관·단체가 참여"로 한다.

2의2.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	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		
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	시책의 추진) ①		
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			
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			
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			
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			
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			
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의2.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		
	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		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	③		
내 안전문화활동에 <u>주민이 참</u>	<u>주민과 기</u>		
<u>여</u>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	<u>관·단체가 참여</u>		
시행할 수 있다.			
	<u>.</u>	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